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한-아세안 FTA]

- 태국 재무부는 태국 내각이 승인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세특혜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2021년 12월 28일 관보 공지하였음 * [붙임1] 공지 참고
- 태국 관세청은 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면세 및 관세율 인하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2021년 12월 29일 공지하였음 * [붙임2] 공지 참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태국 관세청은 2022년 2월1일부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여 효력이 발생됨을 공지하였음 * [붙임3] 공지 참고
 - 한국을 제외한 협정국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추가공지를 발표해 한국을 포함하였음
 - 공지일 : 2022년 1월 26일

- 주요품목 관세율표

HS코드	명칭	관세율				제외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2122111	김(건조한 것)(식용의 것)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중국
19023040	라면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1069099	조제품 기타	4.50%	4%	3.50%	3%	
08101000	초본류 딸기(신선)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1039019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0089930	김(Laver)	28.50%	27%	25.50%	24%	
1905901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905902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202109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03071200	냉동한 것(굴)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1039013	고추장	면제	면제	면제	면제	
08061000	포도(신선)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005991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7%	24%	21%	18%	
22089030	소주	57%	54%	51%	48%	
22060099	과일 소주	57%	54%	51%	48%	
21050000	아이스크림	28%	26%	24%	22%	
21069092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4.50%	4%	3.50%	3%	
21011290	커피조제품 기타	RCEP 비특혜 품목				
08083000	배(신선)	면제	면제	면제	면제	
08107010	단감(신선)	면제	면제	면제	면제	
08093000	복숭아(넥타린 포함/신선)	면제	면제	면제	면제	
08081000	사과(신선)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9041090	곡류 조제품(빵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2022년-2041년까지의 전체 관세율표는 원문공지를 통해 확인가능

- 태국 재무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기본협정에 대해 관세 면세 및 감면 조건 등 내각이 승인한 내용을 공지하였음
 - * [붙임4] 공지 참고
 - 공지일 : 2022년 12월 28일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데이트('22.1.17)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V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เล่ม 138 ตอนพิเศษ 310 ง 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

(2021년 12월 30일 관보 공지)

태국 재무부 공지
한-아세안 관세 면세 및 감면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력협정과 한-아세안 포괄 경제적 무역협력협정의 기본 협정 의정서, 한-아세안 경제적 무역협력협정 기본 협정에 대한 태국 국왕의 가입관련 프로토콜과 한-아세안 경제적 무역협력협정정의 기본 협정 제3 의정서, 태국 국왕 승인 법률 No.8(1987년)에 의해 개정된 관세 법령 14항 (1987)에 대해 재무부 장관은 태국 내각이 승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제1항 2017년 11월 10일에 공지한 한-아세안 면세 및 감면 재무부 공지, 2019년 07월 12일 에 공지한 한-아세안 면세 및 감면 재무부 공지, 그리고 2020년 02월 01일에 공지한 한-아세안 면세 및 감면 재무부 공지를 폐지한다.

제2항 본 공지의 1, 2, 3번의 관세율표(별첨1의 공지원문 참고)에 따라 관세 면세 및 감면을 적용한다.

제3항 제2항의 품목은 관세 면세 및 감면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한-아세안의 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제품은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 해당 무역협정에 근거해 수입 관세율표 1 (*별첨1: 4-416페이지) 과 같이 품목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운영 규정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AK Form)를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무역협정에 근거해 수입 관세율표 2 (*별첨1: 417-421페이지)에 따른 품목은 수입시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1.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운영 규정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AK Form)
 - 3.2. 수입량이 제한된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면세 자격 증명서(할당량 내)
4. 해당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율표 3 (*별첨1: 422-447페이지)에 따른 품목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운영 규정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AK Form) 제출해야 한다.
5. FOB 가격이 200달러 초과하지 않은 상품은 원산지 증명서 (AK Form)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수입자는 통관절차상에 원산지 증명서 (AK Form)의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관세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관세특혜 사용 요청을 알리고 먼저 정상관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제4항 수입업자는 관세청국장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항 본 공시는 2022년01월01일부터 시행된다.

※ 주요 수출 품목 관세율표

분 류	코 드	하위 코드	항목	세 율		비고
				%	바트/ 수량	
08.10	0810.10.00	50	딸기 (신선)	5 (AK3)	-	변동없음
21.03	2103.90.13	89	소스류 (고추장 및 메주)	5 (AK3)	-	변동없음
19.02	1902.30.40	00	라면	면제 (AK1)		변동없음
19.02	1902.30.90	00	떡볶이, 라볶이	면제 (AK1)		변동없음
19.05	1905.32.20	00	과자류 /초코하임	면제 (AK1)		변동없음
21.03	2103.10.10	00	간장	5% (AK3)		변동없음
16.04	1604.20.20	00	생선 소시지	면제 (AK1)		변동없음
20.08	2008.99.30	89	김	5% (AK3)		변동없음

[붙임2]

관세청 공지
No.234/2564
제목: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면세 및 관세를 인하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기준 및 절차 공지

태국 재무부의 한-아세안 관세 면세 및 감면 공지를 준수하기 위해 관세청은 Customs Act. B.E. 2560 (2017)의 18조에 근거하여 관세청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고시한다.

제1항 관세청 공지 No.161/2560, No.177/2562 폐제한다.

제2항 이 공지에 'AK 협정'은 한국 및 아세안의 경제 무역 협정을 의미한다.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1)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절차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따라 발급된 아세안 회원국의 원산지 증명서 (Co Form AK ASEAN)
- (2)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절차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따라 발급된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 (Co Form AK ASEAN)

“수입 자격증명서”는 해당 무역 협조에 따라 수입 수량(할당량)에 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서를 의미한다.

섹션 1 원산지 결정기준 및 납품 조건

제3항 원산지결정조건

(1) 원산지 조건

- (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 (1.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Change of Tariff Heading: CTH) 세 번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Product Specific Rules: PSR) 또는,
- (1.3) 개성공단의 물품 (Gaesoeng Industrial Complex List: GIC List)
 - (1.3.1) 역외부가가치 (FOB) 40% 이하
 - (1.3.2)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 (1.4) 위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 준용하여 이 공지의 첨부 1에 따라 관련 규칙인 부록 3에 적용된다.

원산지결정조건	원산지 표기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2)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3) 일정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과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40%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6”

(2) 원산지결정조건에 사용한 HS Code

2.1 HS Code 2017 및 HS Code 2022 비교표 (Correlation Table) 참고 [시별첨2 참고](#)

제4항 수출입 절차

- (1) 품목은 수출입 당사자 영역에서 직접 배달되어야 한다.

섹션 2 원산지 증명서 관련 내용

제5항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칙 (Form AK)

- (1)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양식 및 내용
 - (1.1)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양식

- (1.1.1.) 아세안 회원국의 원산지 증명서 (Co Form AK ASEAN)은 이 공지 붙임 파일 (6-1) 양식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별첨3\] 참고**](#)
- (1.1.2)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 (Co Form AK KOREA)은 이 공지 붙임 파일 (6-2) 양식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별첨4\] 참고**](#)
- (1.1.3)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 페이지 (Co Form AK Additional Page)가 있는 경우 이 공지 붙임 파일 (6-3) 양식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별첨5\] 참고**](#)
- (1.2)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및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 페이지 (Co Form AK Additional Page)는 수출 당사자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해야 하고 서명 및 스탬프 또는 전자 형식의 스탬프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 및 스탬프가 없는 경우는 관세청에 미인정할 것이다.
- (1.3) 원산지 증명서 (Form AK)는 A4 페이지를 사용해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 (1.4) 원산지 증명서 (Form AK)는 발급한 기관의 참조번호가 있어야 한다.
- (1.5)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제8란은 제조자 및 생산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제3항)에 따라 적어야 한다.
- (1.6)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어야 한다.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의 경우는 역내가치비율 (regional value content) 가격으로 적어야 한다. [***\[별첨6\] 연결원산지증명서 양식 참고**](#)
- (1.7) 원산지 증명서 (Form AK) 한 문서에는 여러 품목 지정가능하나 품목별도 원산지 자격이 다를 수 있다.
- (2)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발급 및 유효기간
- (2.1) 수출업체는 모든 서류를 접수 후 3일 내에 해당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을 완료한다.
- 지정한 기간 내에 발급 불가능한 경우는 소급발급 가능하며 소급 발급시 원산지 증명서 (Form AK)에 "Issued Retroactively"표기해야 한다.
- (2.2) 원산지 증명서 (Form AK)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 (3)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사용
- 3.1 한 문서의 원산지 증명서/한번 수입 시 사용 가능
- 3.2 같은 원산지 증명서 (Form AK)에 비혜택 및 특혜택 품목이 있는 경우는 특혜 품목이 그대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4)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수정, 재발급 및 사본발급 규정
- (4.1)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수정 조건은 아래와 같다.
- 4.1.1 권한 서명자 허가 받은 후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내용을 수정 및 추가 가능하며, 수정 후 원산지 증명서를 수권 발급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정 후 서문에 빈공간이 없도록 검은 라인으로 그어야 한다. 또는,
- 4.1.2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재발급의 경우는 발급 기관에서 재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Form AK)에서 원산지 증명서 (구버전)의 발행 날짜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구버전의 원산지 발행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 (4.2)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분실의 경우는 사본 발급 가능하다. 다만, 원본 발행된 날짜부터 12개월 유효하며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제12란에 "CERTIFIED

TRUE COPY" 표기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Original) 발행 날짜도 같이 명시해야 한다.

섹션 3 수입 통관 절차

3.1 일반 통관 절차

제 6 항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및 관세혜택 받는 인증서를 제출

- (1)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원본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 수입면허증 번호를 쓰거나 도장 찍어서 관세청에서 출고되기 전에 관세청 또는 수입 검문소에 제출해야 함.
- * 수입 1회당 /해당 원산지 증명서 1부 적용해야 함.
- (2) 관세혜택 받는 인증서를 제출 필요 시 해당 인증서의 오른쪽 상단에 수입면허증 번호를 쓰거나 도장 찍어서 관세청 출고되기 전에 관세청 또는 수입 검문소에게 제출해야 함.

제 7 항 수입 절차진행중 관세혜택 활용 시 수입면허증 작성

- (1) 수입자가 한-아세안 관세 면제 및 감면 공지에 따른 한-아세안 원산지 품목의 관세 혜택 활용에 대한 확인 필요
- (2) 수입자가 섹션 1 원산지결정기준 및 납품 조건과 섹션 2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규정 확인
- (3) 수입자가 아래와 같은 관세청 기준에 따라 수입면허증 작성
 - (3.1) 수입신고내역 (Import Declaration Detail)
 - (3.1.1) Privilege Code
 1.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 면제 및 감면 재무부 공지의 목록 1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AK1"를 명시
 2.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 면제 및 감면 재무부 공지의 목록 2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AK2"를 명시
 3.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 면제 및 감면 재무부 공지의 목록 3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AK3"를 명시
 - (3.1.2) 원산지 (Origin criteria) 칸에 Form AK에 표시된 원산지를 명시
 - (3.2) 수입신고내역의 허가서 부분 (Import Declaration Detail Permit)
 - (3.2.1) 원산지증명서 (Form AK)에 관련 정보 기입 기입
 1. 허가서 번호 (Permit Number)은 원산지증명서 (Form AK)의 등록번호 기입
 2. 허가서 발급일 (Issue Date)은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일 기입
 3. 허가서 발급 기관 (Permit Issue Authority)의 식별번호는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 특혜를 요구한 수출당사국의 코드 기입
 - (3.2.2) 관세특혜 받는 인증서 제출 필요할 시
 1. 허가서 번호 (Permit Number)은 관세특혜 받는 인증서 번호 기입
 2. 허가서 발급일 (Issue Date)은 관세특혜 받는 인증서 발급일 기입

- 3.) 허가서 발급 기관 (Permit Issue Authority)의 식별번호는 대외무역국 (DFT)의 코드 또는 상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제 8 항 수입자가 수입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Form AK) 제출 못할 경우

수입자가 수입 통관하면서 원산지증명서 (Form AK) 또는/또한 관세특혜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관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 원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수입신고서 작성
 - 관세청 보관에서 제품을 방출하기 전 수입자의 요구를 신청하고 먼저 정상 관세율로 납부해서 다음과 같이 관세청 기준에 따른 수입신고서 작성
 - (1.1) Argumentative Reason Code 칸에 "P14"라는 사유코드 기입
 - (1.2) Argumentative Privilege Code 칸에 요 공지의 7항 (3) (3.1)번에 따른 "AK1, AK2 또는 AK3" 기입
 - (1.3) 해당 수입신고서 정보를 관세청 컴퓨터 시스템으로 송부 수입자가 해당 수입신고서 정보를 관세청 컴퓨터 시스템으로 송부하였으나 요 공지의 8항에 따른 관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 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청에서 보관중인 제품을 방출하기 전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수정 요청하고 이유 설명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 (2.) 세금 환급을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증명서 (Form AK) 제출
 - 수입자가 요 공지의 7항 (1) (2)번에 따라 시행하고 공지의 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Form AK) 또는/또한 관세특혜 받은 인증서를 제출한다.

제 9 항 원산지증명서 (Form AK) 제출 필요 없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Form AK) 제출 필요 없이 관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은 제품일 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1.) FOB 가격 기준 200불 이하인 당사국의 역내가공 수입품 또는 당사국의 역내가공 우편물로 이러한 수입은 하나 이상의 수입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Form AK 제출을 피하기 위한 행위 또는 조작이라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 (2.) 수입자가 관세청이나 해당 수입 검문소에 관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 요구를 신청해야 함.

제 10 항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Form AK) 수령 거절할 경우이다.

- (1.) 관세를 피하거나 통관 사기가 발견된 경우
- (2.) 공지의 목록 6.1 (CO Form AK ASEAN), 목록 6.2 (CO Form AK Korea), 목록 6.3 (CO Form AK Additional page)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임.
- (3.) 원산지증명서 (Form AK)의 제12란에 발급기관의 서명이나 인장을 날인하지 않거나

- 불완전한 정보 또는 공지의 제 5항 (1) (1.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4.) 원산지증명서 (Form AK)에 원산지규정을 명시하지 않거나 원산지규정을 결정 조건인 공지의 제 3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5.) 수입되는 물품이 원산지증명서(Form AK)에 명시된 수출 물품과 맞지 않을 경우
- (6.) 관세청가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기관에게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재검토 요청할 시 6개월 이내에 요청의 응답지 않는 경우 (공지의 5목록 14번 참고)
- (7.) 관세청가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기관에게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재검토 요청할 시 해당 기관 응답한 정보는 원산지규정 결정이나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고려하기에 부족하거나 협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 11 항 원산지증명서(Form AK) 보관

수입자는 통관서류나 원산지 증명서(Form AK)를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세션 3.2 특별한 사항의 통관 절차

해당 세션에 따라 통관 절차하면서 물론 세션 3.1 일반 통관 절차도 시행해야 한다.

제 12 항 원산지증명서(Form AK) 유효기간 마감 후에 제출할 것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인 12개월 내에 수입하면 제조업자나 수출업자가 인정할 수 있는 통제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게 사유 포함한 제출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항 여러 가지 품목

원산지증명서에 여러 가지 품목을 포함할 시 그 중에 한 품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품목의 관세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 항 제3국 통해서 거래시

- (1.) 수입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으면 수입자가 제3국에서 발급된 송품장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 (2.)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 한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입한다.

제 15 항 재수출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Form AK)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원본을 바탕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본

공지의 목록 7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별첨6\] 참고](#)

- (1.)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원본을 바탕으로 발급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Form AK)는 본 공지의 섹션 1: 원산지결정기준 및 납품 조건 또는 섹션 2: 원산지를 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Form AK) 원본과 동일한 일부 내용이 있어야 하고 특히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Form AK)의 모든 칼럼에 완전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 (2.) 중간 경우 당사국에서 발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Form AK)인 경우에는 제 13란의 “연결 원산지 증명서” 항목에 체크(✓)한다.
- (3.)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Form AK)의 제 9란에는 해당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며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수출품의 일부를 거래(Partial Export Shipment) 할 경우는 제외하며 태국으로 수출품의 가격만 신고하면 된다.
- (4.) (BACK-TO-BACK Form AK)는 최초 원산지증명서(Form AK) 원본 발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제 16 항 재수출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Form AK), Re-export인 경우

수입한 후에 BACK-TO-BACK Form AK 조건으로 한-아세안 당사국으로 다시 수출할 경우 정상 통관절차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 (1.) 수입 관세 납부가 완료된 경우,
 - (1.1) 수입자가 관세청에서 제출했던 Form AK 원본에 대한 반납을 신청한다.
 - (1.2) 수입신고서 작성 : 수출업자가 수입신고서의 허가서 부분 (Import Declaration Detail Permit)만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2.1) 허가서 번호 (Permit Number)은 원산지증명서 (Form AK)의 등록번호 기입
 - (1.2.2) 허가서 발급일 (Issue Date)은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일 기입
 - (1.2.3) 허가서 발급 기관 (Permit Issue Authority)의 식별번호는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를 요구한 당사국의 코드 기입
 - (1.3)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업자가 “Remark”란에 “...(Form AK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번호)...에 따라 수입한 제품”이라고 표시한다.
- (1.4) 화물이 선박에 적재된 후에 수출업자가 관세청에 제출했던 Form AK 원본을 반납 받은 후, 인증도장을 받기 위해 대외무역국에 제출한다.
- (2.) 수입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가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며 본 공지의 제 6 항 (1) 및 제 16 항 (1)에 따라 시행 한다. 또는 Form AK 제출 필요 없이 관세혜택 받을 수 있는 제품인 경우 본 공지의 제 9 항 및 제 16 항 (1)에 따라 시행 한다.

제 17 항 박람회로 진열된 제품

수출 당사국에서 박람회에 진열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태국으로 보내고 전시하는 동안은 해당 국가 관세청의 감독 하에 있다. 제품을 진열하는 동안 또는 박람회 끝난 후에 진열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태국으로 보내면 수입자가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

- (1.) 원산지증명서(Form AK)의 제 13란의 “Exhibition” 항목에 체크(✓)하고 제 2란에 행사명 및 행사주 소 기입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제출한다.
- (2.) 필요할 경우 수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것이다.
 - (2.1) 수출 당사국에서 전시회 개최하는 국가로 수출하고 해당 국가에 전시회 개최사실
 - (2.2) 수출업자가 전시된 제품을 태국 수입자에게 판매하거나 전해주고
 - (2.3) 전시하는 동안 또는 전시회 끝나고 바로 해당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며 수출 제품은 전시 제품과 동일한 상태이다.

제 18 항 일시 권리 정지

통관 시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특혜 관세율을 정지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1) 수입증빙, 관련서류, 원산지증명서 (Form AK)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세관원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나 수입품목을 먼저 통관을 시키고 수입자는 품목 검사받기 위해 샘플용으로 몇 가지 품목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수입 품목을 보증하기 위해 정상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2) 원산지 증명서에 표기된 일부의 품목 리스트가 문제 있는 경우는 문제 발생한 품목만 비특혜로 판단되며 세관원이 수입품목을 먼저 통관을 시키고 수입자는 품목 검사받기 위해 샘플용으로 몇 가지 품목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입 품목에 대한 보증으로 정상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3) 수입 품목의 원산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세관원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결과를 대기하는 동안 세관원이 먼저 통관을 시키고 수입자는 수입 품목을 보증하기 위해 정상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4) 원산지 증명서에 표기된 HS Code와 통관 검사한 Hs code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조건에 따른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으로 판정이 되면 검사 결과의 Hs Code에 따라 정상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수입증빙서의 HS code 가 문제 있는 경우의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9 항 원산지증명서 (Form AK)의 사용 포기

원산지증명서 (Form AK)의 사용 포기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통관에 원산지증명서 (Form AK)의 글자 부분에 작은 차이점이 있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Form AK)에 표기한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적은 경우는 포기 가능하다. 다만, 실제 수입량이 더 많은 경우는 정상관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제 20 항 수입 통관지 및 관세사무소가 변경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한 통관지 및 관세사무소에 포기요청을 제출하고 변경 사유를 해명해야 한다.

제 21 항 본 공지는 2022년01월01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12월 29일
Mr. 파차라 아난따찐
관세청 사무국장

[붙임4]

เล่ม 138 ตอนพิเศษ 320 ง 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

관보 공지 2021년 12월 30일

태국 재무부 공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관세 면세 및 감면

[붙임3]

관세청 공지
No.12/2565

제목 : RCEP 협정국 추가 공지

태국 재무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관세 면세 및 감면 공지를 준수하기 위해 관세청은 Customs Act. B.E. 2560 (2017)의 7조, 25조, 51조, 및 63조에 근거하여 관세청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고시한다.

제1항 RCEP협정 관세 면제 및 감면 특혜 당사국 명단은 아래와 같다.

- (1) 브루나이
- (2) 호주
- (3) 뉴질랜드
- (4) 일본
- (5) 캄보디아
- (6) 싱가포르
- (7) 중국
- (8) 라오스
- (9) 베트남
- (10) 한국 *추가

제2항 본 공지는 2022년02월0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01월 24일
Mr. 파차라 아난따찐
관세청 사무국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기본 협정에 대한 태국 국왕 승인 법률 No.8(1987년)에 의해 개정된 관세 법령 14항 (1987)을 재무부 장관은 태국 내각이 승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제1항 본 공지의 1, 2, 3번의 관세율표(*별첨7의 공지원문 참고)에 따라 관세 면세 및 감면을 적용한다.

제2항 제1항 품목의 관세 면세 및 감면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근거하여 제품은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에 따라 RCEP 당사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2) 해당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율표 1.2에 따른 품목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운영 규정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Form RCEP) 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증명서 (Declaration of Origin by Approved Exporters)를 제출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원산지 대상 제품이 본 공지의 1, 2, 3번의 관세율표에 제외된 국가로 표기되지만 특혜관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ㄱ) 태국의 당사국 대상 특혜관세 품목이 되어야하고 조건은 아래와 같다.
 - 1) 관세율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고 당사국에서 20% 이상 생산해야 한다. 또는
 - 2) 1)에 언급한 품목 이외에 하나 이상이 협정국가에서 원산지 재료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품목. 다만, 최소 공정 및 가공 방법 제외해 생산해야 한다.

최소 공정 및 가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ㄱ.)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ㄴ.)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ㄷ.)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
- 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ㅁ.)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ㅂ.) 제품을 부품으로의 분해
- ㅅ.) 동물의 도살
- ㅇ.)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ㅈ.)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또는
*)호부터 **)호까지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L) 3번의 *) 호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수출당사국의 고가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일 경우 수입자가 관세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상품의 CIF 가격이 미화 200USD 미만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Form RCEP) 또는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Declaration of Origin by an approved exporter) 제출할 필요 없다.

(5) 통관 절차인행시 원산지증명서 (Form RCEP) 또는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Declaration of Origin by an approved exporter)를 제출할 수 없지만 관세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면 관세해택 적용 신청하고 정상관세율을 미리 지불한 후 추후에 환급 요청하면 된다.

제3항 본 공지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공지일 2021년 12월 28일

Mr. 파차라 아남따친
관세청 사무국장

* [별첨7] RCEP 관세율표 확인방법

HS 코드	구분	명칭	관세율																				제외국가																
			2022년부터 2041년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09.01	0101.21.00	00	--설탕(설탕)입니다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09.02	0102.21.00	00	--설탕(설탕)입니다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09.03	0103.10.00	00	--설탕(설탕)입니다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	27%	24%	21%	18%	15%	12%	9%	6%	3%